

農家金融의 行態와 構造分析 —農家負債문제를 중심으로—

李 殷 雨 · 張 炳 翼

經濟學科

(1986. 4. 28 접수)

〈要 約〉

이論文은 우리나라 農家負債의 現況과 原因을 분석하고 그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지조사는 울산근교의 100호의 標本農家를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조사일자는 1986년 1월 15일 현재 농가당 평균 부채는 1,889千원으로 나타났다. 이 農家負債의 原因은 어떠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原因은 國民經濟내에서 農業部門의 역할을 등한시하면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日本農家負債의 現況, 原因 그리고 그 對策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A Study on the Financial Behaviors of Farm-household ---with Emphasis on the Farm-household Debt---

Lee, Eun-Woo, Chang, Byung-Ik

Dept. of Economics

(Received April 28, 198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state and the causes of farm-household debt. On Jan. 15, 1986, the average debt of sample farm-houschold in the suburbs of Ulsan is 1,889 thousand won. The causes of these phenomena can be explained in respect of the government policies accentuating rural-urban disparities. And the experiences of Japan in 1930's have been surveyed in order to derive the suggestions to solve this debt problem.

I. 序 論

우리나라의 經濟는 1960년대 이후 外向的인 工業化를 중심으로 한 經濟開發政策에 힘입어 많은 구조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종래의 農業部門 중심에서 점차 製造業,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농업부문은 타부문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나후퇴계 되었고 그 결과 농업부문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주 農家經濟가 전수로 침체하게 되어 이것이 안정적인 國民經濟의 發展에 아주 큰 세약점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農家負債狀態는 될 수 있다.

農家負債가 증가하는 것은 收入보다 支出이 많은데 인유한나. 민지 收入面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이 研究는 大學研究費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소득원은 이루 취약하나고 할 수 있다. 農家所得의 67%(1984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農業所得을 보면 生產基盤이 취약한데다 政府의 低穀價政策, 그리고 畜產物價格波動 등으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農外所得도 현재 농촌에서는 농의소득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로부터의 送金 및 補助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반면 農業經營費 상승, 教育費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農家の支出은 꾸준한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농가들은 현재 아주 낮은 수준의 消費生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營農費 및 家計費支出을 충당하지 못하여 대나수의 농가들이 負債를 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農家負債의概況과 그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蔚山군교에서 임의추출한 100호의 농가를 標本調查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농가의 부채상황 및 그와 관련된 세반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農家負債의原因을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國民經濟내에서 농업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 이런 관점에서 농가부채문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1930년대 日本의 사례를 고찰해 보고 제Ⅴ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고 또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農家負債의 實態

1. 調査概況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負債現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標本農家를 선정하여 現地調査를 수행하였다. 標本農家는 慶南 蔚州郡의 3개면에서 무작위로 100戶의 農家를 선정하였다. 현지조사는 5명의 調查員에 의해서 1986년 1월 16일~1월 21일까지 6일간 면밀히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조사내용은 소득 등 流量(flow)變數에 해당되는 것은 1985년 1년간을 조사내장기간으로 삼았고, 부채현황 등 貯量(stock)變數에 해당되는 것은 1986년 1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농가 100戶는 耕種을 위주로 하는一般農家는 86戶, 果樹農家는 6戶, 기타가 4戶이 있다. 물론 일반농가중에서도 대부분이 韓牛를 사육하고 있고, 또 果樹農家와 畜產農家들도 대부분이 벼농사를 힘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농가유형을 이렇게 구분한 빙법은 어느 부분으로부터 가장 많은收入을 얻는지에 따른 것이다. 기티에 해당되는 가구는 農外所得이 그所得源이 되는 가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사대상 100戶를 耕地規模별로 구분해 보면 0.5정보미만의 농가는 17戶, 0.5~1.0정보사이의 농가는 31戶, 1.0~2.0정보사이의 농가는 39戶, 그리고 2.0정보이상의 농가는 13戶이다. 여기서 耕地規模라 하는 것은 自家所有地에다 借入地를 더한 것에나 貸付地를 제외한 규모를 나나내는 것이다. 조사대상농가의 호당 평균경지면적은 1.13정보이며 이중 논이 0.82정보, 밭이 0.12정보, 기타가 0.19정보이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경지면적(1984년)은 1.12정보, 이중 논이 0.69정보, 밭이 0.43정보임에 이와 같이 평균농가는 우리나라 전체평균에 비해서 논의 경지규모는 조금 크고 밭의 경지규모는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0.5정보미만 농가의 평균경지규모는 0.25정보, 0.5~1.0정보 사이의 농가의 평균경지규모는 0.68정보, 1.0

〈表 1〉 標本農家の 耕地規模 및 家口員數 現況(戶當平均)

구분	경지 규모	평균(합계)	0.5정보 미만	0.5~1 정 보	1~2 정 보	2정 보 이상
경지 규모(町步)	1.13	0.25	0.68	1.37	2.54	
논	0.82	0.16	0.56	1.05	1.67	
밭	0.12	0.08	0.06	0.13	0.27	
기타	0.19	0.01	0.06	0.19	0.60	
가구 인수(人)	4.62	4.12	4.16	5.05	5.08	
포본농가수(戶)	100	17	31	39	13	

~2.0정보 사이의 농가의 평균 경지 규모는 1.37정보, 2.0정보 이상 농가의 평균 경지 규모는 2.54정보로 나나났다. 또 戶當平均 口頭員數는 4.62인인데 이 중 0.5정보 미만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4.12人, 0.5~1.0정보 사이의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4.16인, 1.0~2.0정보 사이의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5.05人, 2정보 이상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5.08人이 있다.

2. 農家の 借入狀況

標本農家の 1985년 1년간 所得狀況과 1986년 1월 15일 현재의 負債狀況을 나나내고 있는 것이 <表 2>이다. 標本農家の 1985년 1년간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4,300千원인데 이 중 農業所得이 2,988千원으로 69.7%를 차지하고 農外所得이 1,302千원으로 30.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農家負債는 호당평균이 1,889千원으로 나타났다. 政府의 발표에 의하면 1985년도의 戶當平均 農家所得은 5,743千원이고 戶當平均負債는 2,071千원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인구의 조사결과와 정부의 조사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표본설계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농가경제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정한 本標農家에는 0.1정보 미만의 耕作農家와 無耕地農家, 그리고 農業勞動者家口는 세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農家中에서도 中農, 大農위주로 표본이 실계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농가 중에서 경지규모가 0.5정보 미만의 농가는 30.8%이나(1984년) 농가경제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농가 중에서 0.5정보 미만의 농가는 18.4%이고, 또 전체농가 중에서 경지규모가 2.0정보 이상인 농가는 5.5%이나 농가경제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농가 중에서 2.0정보 이상의 농가는 10.2%이다. 이렇게 농가경제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설계가 상향폐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호당소득과 정부조사의 호당소득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호당부채액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조사는 1985年度末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본 연구는 1986年度初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준자의 조사시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所得 중에서 農業所得은 耕地規模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農外所得은 경지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경지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업이외의 부문에 취업해야 할 기회가 많거나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비농업부문에서 소득을 증대시켜야만 하는 것에 기인하나. 반면에 個別農家の 平均負債額은 耕地規模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年間所들에 대한 負債의 비율은 2.0정보 이상의 경지규모를 가진 농가는 30%내외이나 0.5정보 미만의 경우는 56.1%로 나타나 그만큼 소득이 부채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 標本農家 100戶 중에서 負債를 갖고 있는 농가는 74戶로서 借入農家比率은 74%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0.5정보 미만의 경지규모를 가진 농가 17戶 중에서 11戶가 부채를 갖고 있었고, 0.5~1.0정보 사이의 규모의 농가는 31戶 중에서 21戶가 부채를 갖고 있었다. 또 1.0~2.0정보 사이의 규모의 농가는 39戶 중에서 35戶가 부채를 갖고 있었고 2.0정보 이상의 규모의 농가는 13戶 중에서 9戶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農家の 借入行態 중에서 借入處를 살피해 보면 전체를 평균한 경우 借入金額의 47.2%가 農協單位組合에 기 카입한 것이고, 49.6%가 이웃의 農家나 都市의 親知에게서 빌린 私債이고 나머지 3.2%가 기타의 경우이다. 이것에 수 있듯이 현재의 農家の 借入處는 농협 단위조합과 사재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

<表 2> 標本農家の 所得 및 負債狀況

(단위 : 천원)

소득 및 부채	경지 규모	평균	0.5정보 미만	0.5~1.0정보	1.0~2.0정보	2.0정보 이상
소 득	는	4,300	3,144	3,319	4,933	6,251
농 위 소 득		2,998	1,355	2,113	3,687	5,192
농 외 소 득		1,302	1,789	1,206	1,246	1,057
부 채	재	1,889	1,764	2,030	1,835	1,877

〈表 3〉 借入處別 平均借入額

(단위 : 천원), ()안은 비율

경지규모 카입처	평 균	0.5정보 미만	0.5~1.0정보	1.0~2.0정보	2.0정보 이상
농협 단위 조합	892.1(47.2)	1,157.6(65.6)	907.4(44.7)	935.9(51.0)	376.9(20.0)
사 채(농가)	793.0(42.0)	605.9(34.4)	996.8(49.1)	476.9(26.0)	1,500.0(80.0)
사채(도시의 주거)	144.0(7.6)	0	0	369.2(20.1)	0
기 타	59.6(3.2)	0	125.8(6.2)	52.8(2.9)	0
계	1,888.7(100.0)	1,763.5(100.0)	2,030.0(100.0)	1,834.8(100.0)	1,876.9(100.0)

이외의 농협조합, 축협, 시중은행, 바은금고 등에서 차입을 한 경우와 사채 중에서 전부사채입자 등에서 차임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규모별로 借入處를 분석해 보면 0.5정보 미만의 경지규모의 농가는 실태적으로 농협단위조합으로부터의 借入比率이 높고 私債의 借入比率이 낮은 반면 2.0정보 이상의 경지규모의 농가는 농협단위조합으로부터의 차입비율이 낮은 반면 私債의 차입비율이 높다. 그러나 0.5~1.0정보, 1.0~2.0정보 사이의 농가들은 또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耕地規模과 借入處와의 차이는 일반화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借入金의 用途別 使用處는 나타내는 것은 〈表 4〉이다. 〈表 4〉는 農家借入金의 支出項目을 資本的支出, 農業經營費, 消費的支出, 教育費, 그리고 其他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 추사, 청고의 증축 또는 세량, 그리고 농기기 구입을 포함하는 資本的支出은 신개借入企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밖에 차지하지 않고, 특수직물제작, 축산자금, 비료, 농약재료 등 農業經營費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 그리고 의료비, 관공장제비, 바구소비제구입, 생활비 등 消費的支出이 전체 農家借入金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9%, 그리고 教育費支川이 농기차입금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8%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0.5정보 미만 경지규모의 농가는 차입금 중에서 消費的支出이 차임 많으나 2.0정보 이상의 경지규모를 가진 農家는 教育費支出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986년 1월 15일 현재 농가의借入金 중에서 資本的支出와 農業經營費에 대한支出이 실태적으로 각각 消費的支出와 教育費에 대한支出이 실태적으로 많은 것은 농업경영비 등에 대한 차임금은 당연한데 말까지 대구원 상환하기 때문이다. 농가의借入金 중에는 차임금은 대부분의 농가에 차는 기운에 精耕을 판매하는데금으로 성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현재의 農家戶當平均 1,889千원의 負債은 대구원이 農業所得밖으로는 성취하기 어렵고 또 농가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부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농가부채간액 중 消費的支出와 教育費支出는 위하여 차임한 금액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현재의 농기소득수준이 기본적인 消費支出과 子女의 教育費를 부담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현재 이렇게 負債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質問에 대해 〈表 5〉의 같은 결과를 열어보니, 〈表 5〉의 조사방법은 개인농가에게 부채기 증가하는 이유로서 두 가지를 지적케 하

〈表 4〉 用途別 農家借入金

(단위 : 천원), ()안은 비율

경지규모 용도	평 균	0.5정보 미만	0.5~1.0정보	1.0~2.0정보	2.0정보 이상
자본적지출	134.3(7.1)	176.5(10.0)	110.6(5.4)	105.1(5.7)	223.0(11.9)
농업경영비	384.4(20.3)	269.4(15.3)	348.4(17.2)	545.1(29.7)	138.5(7.3)
소비적지출	545.0(28.9)	652.9(37.0)	609.7(30.0)	602.6(32.8)	76.9(4.1)
교육비	619.0(32.8)	252.9(14.3)	941.9(46.4)	248.7(13.6)	1,438.5(76.7)
기타	206.0(10.9)	411.8(23.4)	19.4(1.0)	333.3(18.2)	0
계	1,888.7(100.0)	1,763.5(100.0)	2,030.0(100.0)	1,834.8(100.0)	1,876.9(100.0)

〈表 5〉 負債增加의 理由

		()안은 비율
項	目	度數
축곡, 하곡의 정부수매가격이 지나치게 낮음		44.5(29.7)
채소, 과일 등의 가격불안정		9.0(6.0)
소값 파동		39.0(26.0)
농업 기계화의 확대		5.5(3.7)
교육비의 증가		23.5(15.7)
의료보험의 미실시		4.0(2.7)
폐후상제비의 폐다		7.0(4.6)
높은 소득수준		2.5(1.7)
농업 경영비의 상승		10.0(6.6)
기 나		5.0(3.5)
계		150.0(100.0)

고 그중 1순위는 가중치를 1로 주고, 2순위는 가중치를 0.5로 주어 그 度數를 구하였다. 이 〈表 5〉에서 보면 최근에 농족에서 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농가들이 들고 있는 것은 첫번째로 축곡, 하곡의 政府收買價格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과 다음으로 소값파동 등이다. 이것은 농민들이 자기의 生產活動에 대하여 정당한 報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농기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農家負債의 增加要因으로 교육비 증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농사의 교육열이 종전에 비하여 급속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한 만큼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부채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비교, 농약 등 농업경영비의 상승은 부채증가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6.6%로 나타났다. 한편 채소, 과일 등의 價格不安定에 그 원인을 둘러는 시장은 6.0%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소지내상지역에 과일, 채소 등의 專業農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또一般農家중에서도 과일, 채소부채의 所得이 선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 기인한다. 그 반면 농업기계화, 의료비, 판혼상제비, 높은 소득수준에 농사부채의 원인으로 들키는 시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負債의 債還

負債의 債還이란 기존의 부채를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農家에 부채가 많나도 하더라도 債還能力이 充分하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負債의 債還方法으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農家所得으로 상환하는 方法, 農家の 財産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방법, 그리고 新規借入에 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농기의 소득수준이 극히 낮은 신내에서 농가의 재적용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부리이고 또 新規借入에 의해서 負債를 상환한다는 것도 세로운 부채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負債微還方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農家の 負債는 農家所得 즉 農業所得이나 農外所得에 의해서 상환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본적인 소비생활을 중시하기 기준으로 부족한 정도의 소득수준의 농가들이 많아 현상태에서의 농기의 부채상환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한 수 있다.

이런 면에 근거하여 농기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하여質問을 한 결과 그 응답은 〈表 6〉과 같이 나타났다. 〈表 6〉에서 보듯이 標本農家 100戸 중 현재 負債가 없는 농가가 24戸,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농가가 11戸, “힘들지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농가가 44戸, “재신이라도 치달하여 갚을 계획이더”의 경우가 16戸, “아무런 계획이 없디”라고 응답한 농가가 5戸로 나타났다. 아무런 내책이 없다고 응답한 5戸 중 4戸는 0.5정부 미관의 경지규모를 기준 농기인데 이것은 영세농의 부채상환능력이 보다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나머지의 경우는 부채의 상환능력에 대한 응답이 경지규모에 따라 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것은 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어느 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 구보의 농가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외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耕地規模에 따른 농기분

〈表 6〉 負債의 償還能力

(단위 : 戶)

구 분	경지 규모 비 반	0.5 정 보 정	0.5~1.0 보	1.0~2.0 정	2.0 이 성 보 상	계
부채가 없다.	6	10	4	4	24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갚을 수 있다.	2	2	4	3	11	
힘들지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	5	13	22	4	44	
재식이리도 처벌하여야 갚을 수 있다.	0	6	8	2	16	
아무런 대책이 없다.	4	0	1	0	5	
계	17	31	39	13	100	

류가 반드시 農家所付와 일치하지 않고 또 각 가구마다 家族構成員에 따라 가계비소액이 다른데 기인한다.

한편 이런 農家負債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 필요가 있느냐의 질문에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농가는 100戶 중 70戶였으며, “부채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므로 정부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대답한 농가는 26戶였고,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농가가 4戶였다. 또 조치가 필요하더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表 7〉과 같다. 이것에서 보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70戶의 농가 중 “빚진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농가는 22戶로 나나났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農家들은 負債問題를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광범위한 정부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경에는 농가들이 부채의 원인이 어느정도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表 7〉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의 종류

(단위 : 戶), ()인은 %

項	口	度 數
빚진 모든 농가에 대해서 싱환유예		9(12.9)
빚진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이자감면		28(40.0)
빚진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이자 및 원금감면		22(31.4)
영세농에 대해서만 싱환유예		4(5.7)
영세농에 대해서만 이자감면		4(5.7)
영세농에 대해서만 이자 및 원금감면		1(1.4)
기 타		2(2.9)
계		70(100.0)

4. 農家の 資金實態

이렇게 많은 農家들이 負債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營農資金의 운용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도에 영농자금의 상태가 어떨려느냐?”의 질문에 標本農家 100戶 중 “대단히 부족하였다”가 17戶, “조금 부족하였다”가 50戶, “부족하지 않았다”가 32戶였다. 또 “단아 농협에서 단기영농 자금을 대부해 주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질문에 “가능한한 많이 대부 받겠다”고 대답한 가구가 22戶, “소액만 대부하겠다”고 대답한 가구가 61戶, “대부·밀을 원호가 없다”고 대답한 가구가 16戶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農家の 營農資金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農家の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너무 낮아서 負債가 증가하고 있으나 營農資金의 운용실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表 9〉에서 영농자금을 대부받았다고 대답한 83戶 중에서 만약 “영농자금을 대부받으면 어느 용

〈表 8〉 营農資金의 狀態

(단위 : 戶)

項 目	度 數
대단히 부족하였다.	17
조금 부족하였다.	50
부족하지 않았다.	32
무 응답	1
계	100

〈表 9〉 단기 영농자금의 필요 여부

(단위 : 戶)

項 目	度 數
가능한 한 많이 대부하겠다.	22
조금만 대부하겠다.	61
내부 만족 필요가 없다.	16
무 응답	1
계	100

도에 사용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表 10〉과 같다. 비로, 농야 등 농업 경영비에 사용하겠나는 농가가 41戶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산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농가가 13戶, 교육비가 12戶이었다.

또 만약 "부울 이내로 돈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아니로부터 차입하겠느냐?"는 질문에 標本農家 100戶 중 農協으로부터 차입하겠나고 대답한 농가는 63戶, 私債을 차입하겠다고 대답한 농가는 37戶이 있다. 또 "이 경우 借入可能性은 어느 정도인가?"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가 35戶, "가능하지만 힘들다"가 62戶, "불가능하다"가 3戶로 나나났다. 이 설문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농촌의 자금공급원은 농협의 자금과 사채사 그 대구분을 이루고 있고, 또 농사들은 농협의 자금에 보다 많이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2戶이 차입해 놓고 있는 자금의 이자율은 거의 대부분이 농협 자금의 경우 연 13.5%이며 私債의 경우 연 24%인 것으로 나나났다. 현재 농협 단위 조합의 대출 자금의 이자율이 일반은행의 대출 자금의 이자율보다 연 2.0% 정도가 높다. 그리고 私債의 利子率은 수년 전만 하더라도 月 3%, 年 36%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기 농가 안정과 더불어 月 2%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私債의 利子率水準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높다"가 8戶, "조금 높다"가 55戶, "적정하나"가 34戶로 나타났다. 한편 農協 단위 조합의 貸出 利子率水準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다"가 25戶, "조금 높다"가 46戶, "적정하나"가 25戶로 나나났다. "굉장히 높다"의 "조금 높다"라고 내용한

〈表 10〉 대부 받은 자금의 사용 회망처

(단위 : 戶)

項 目	度 數
비로, 농야 등 농업 경영비	41
축산 자금	13
교육비	12
주택, 축사, 장고와 같은 풍족 또는 개량	6
생활비	5
기타	6
계	83

〈表 11〉 資金의 借入可能性

(단위 : 戶)

項 目	度 數
충분히 가능하다.	35
가능하지만 힘들다.	62
불가능하다.	3
계	100

〈表 12〉 私債 利子率 水準

(단위 : 戶)

項 目	度 數
굉장히 높다.	8
조금 높다.	55
적정하나.	34
보르겠다.	3
계	100

〈表 13〉 農協貸出 利子率 水準

(단위 : 戶)

項 目	度 數
굉장히 높다.	25
조금 높다.	46
적정하나.	25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2
보르겠다.	2
계	100

농기수를 보니 私値 利子率에 대해서는 63戸가 그렇게 대납을 했으나 農協 貸出利子率에 대해서는 71戸가 그만기 대답을 했다. 뒤진저으로 농협의 대출이자율이 사채 이자율보다는 훨씬 낮으나 농협의 대출이자율에 대해서 보다 무성적인 반응을 나누고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경과에 대해서는 어려가지고 대석할 수 있으나 商利貸 성기율 미지 사채의 이자율이 농협에 조금 하락했으나 公的인 성거율 빙 농협의 대출이 자율은 돈기인정과 내용이 신질서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협이 자우 수준에 대해서 무정식인 대처를 나누었 것으로 추정된다.

III. 農家負債의 原因(一観覺)

한국 우리나라의 農家の 負債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農家所得이 낮은데 영유한다. 農家所得은 農業所得과 股外所得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농업소득은 農產物產出率과 農產物價格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은 농산물 생산성이 가거나, 농산물 가격이 낮거나, 농외소득수준이 낮거나, 또는 이를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서는 농기의 소득수준이 낮아 負債가 증가하는 이유로 농업소득수준이 낮다는 사실, 즉 농산물 가격수준이 낮다는 시장과 농업생산기반이 악하거나 농기상에 촛점을 맞추어 주의를 씌워하고자 한다. 또 농산물 가격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政府의 低農產物價格政策과 무관밀한 農產物輸入의 滥大 등 2가지에 따른 논의를 국한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農業은 한마디로 小農經營이라고 할 수 있다. 小農經營이란 地主이 스스로 地를 점유하고 또 고급된 노동자로서 자신의 생활수단을 가족과 함께 생산하기 않으면 안되는 생활양식이다. 이 小農經營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労動力과 土地와 기나 人手等段이 결합되어 있고, 또 人手等段의 소유가 생산방법에 의한 私的所有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는 것이다. 따라서 소농경영은 고립분산적이며 그 고농은 사회적으로 비문화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나름으로 小農經營의 特長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농업생산이 농민의 가정적 생활을 위해 수행되며 때문에 經營과 生活이 重疊되며 있게 되고 經營目標가 보다 많은 소득의 목표가 된다는 점이나, 즉 소농경영에서는 농부은 經營者이면서 資本家이며 농기에 労動者이기 때문에 이들은 農業所得으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며 하면 경영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小農經營에서는 農業資本家처럼 平均利潤을 전·요로 하지도 않고 地土의 길이 地代를 복고로 하지도 않는다. 물론 30년에 걸친 기간에 걸쳐 부분을 조작하는 일연이 보나 많이 이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연 最低生活이 가능하던 경·임을 세속하게 된다. 이러한 농부들은 농업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이 되어도 농업생산을 쉽게 그만하지 않게 되고 그 경과 小農經營이 기여시킨 資本가 義國家에서 농부의 손에 들어오는 農產物의價格는 극히 저렴한 것이 되고 그 결과 小農民은 점점 궁핍화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¹⁾

일반적으로 農業部門에서 資本主義의 生產模式이 지배적인 경우 農產物價格는 C(不變資本) + V(可變資本) + 土地代+利潤의 水準에서 설정되나 小農體制에서는 最劣等地의 費用價格(C+V)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것은 小農經營의 경우 사신이 資本을 가지고 있고 또 土地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資本의 平均利潤과 地代가 수취되지 않더라도 분명자본비 R(C)에다 차가운 임차료(V)만 취득할 수 있으니 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이다.⁽²⁾

우리나라의 農產物價格水準이 낮다는 것도 이런 환경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기들은 대부분 小農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수준이 地代와 平均利潤을 빼고나면 민족의 종류에 높은 수준이 되기 어렵도록 농업생산을 계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 가격수준이 낮은 이유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政府의 低農產物價格政策과 農產物輸入의 方面 등 2가지에 따른 논의를 신경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지농산물 가격정책의 내용적인 예로 米穀의 政府收買價格을 높이보면 정부의 일자에서 누는 현세의 신정부수매가격수준이 심 생활비를 농민이 고집하고도 농가에게 일정금의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이라

(1) 梅川勉 著(1983), pp.144~147.

(2) 梅川勉 著(1983), pp.106~109.

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현재의 쌀생산비 통계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보면 현재의 쌀수매가격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난다. 즉 쌀생산비중 努力費를 製造業勤勞者勞賃으로 대체하고 85% 수준의 限界農家の 生產費를 기준으로 한 경우 현재의 쌀政府收買價格수준은 겨우 費用價格(C+V)의 수준에 와있을 뿐이고 優等地 또는 평균면적 이상의 경지규모를 가진 농가에 있어서는 萌芽的利潤을 상립시킬 수 있다.⁽³⁾나 이 萌芽的利潤도 地代로 흡수되어 버리고 資本蓄積을 위한 利潤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³⁾ 즉 일가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高米價政策을 시행하고 있다는 논리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분석해 보면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논비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農業收入의 약 70%정도가 米穀으로부터 얻는 收入인데 경부가 계속 쌀수매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온 결과 농가소득 수준이 하락한 것이 농가부채증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農產物價格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또 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農產物輸入의 확대에 있다. 우리나라의 外國農產物의 도입은 休戰後 「P.L. 480」에 의한 미국의 剩餘農產物이 들이오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후 무관세한 농산물수입은 국내의 생산기반을 크게 야하시키고 食糧自給度를 갈수록 저하시켰다. 식량증 곡물의 가금도율 보면 1965년도 93.9%이던 것이 1975년에 73.0%, 그리고 1984년에는 48.9%로 낮아졌다. 이제 멀찌 우수수는 거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농산물 수입에 소용되는 자금은 22억 달러(1984년)정도이나.

이처럼 農產物輸入이 계속된 것은 比較優位論의 입장에서 외국의 값싼 農產物을 수입해서 식료품가격을 기림하게 유기심으로써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그 주 내용이었다. 비교우위론이라는 것은 각 國家가 상태적으로 유비한 상품을 생산하여 서로 무역을 하면 그의 국 쟁쟁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비교우위론에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그 조건들은 ① 労動價值論이 성립하고 또 양국간의 不等價交換이 없을 것 ② 수확체감면적이 사용하지 않을 것 ③ 資源의 완전고용 ④ 國際收支의 均衡 ⑤ 資源의 完全移動性 등이 칭립해야 하는 것이다.⁽⁴⁾ 이런 실제조건위에서만 비교우위론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론은 우리나라의 畜牧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는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都市이나 農村에니 많은 潛在失業이 존재하고 있고 농촌의 노동력중 幼年層과 老年層은 농업을 포기한 경우 농지로 轉職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우리나라의 농지도 농업을 포기할 경우 터용도로의 전환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것을 실증하는 데도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결과 많은 농기들이 유류화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1976년도의 우리나라 耕地利用率이 141.8%이던 것이 1984년에는 124.9%로 하락했나는 사실이 잘 나타내고 있다. 또 國際收支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1960년대 이후 貿易收支는 계속 赤字였다. 이런 몇 가지 점에서 보더라도 비교우위론은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서도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물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많은 農產物輸入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일부

〈表 14〉 農產物의 自給度 變化

연도	生産額	生産額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기타
1965	93.9	100.7	106.0	27.0	36.1	100.0	100.0	
1970	80.5	93.1	106.3	16.4	18.9	86.1	96.9	
1975	73.0	94.6	92.0	5.7	8.3	85.8	100.0	
1980	56.0	95.1	57.6	4.8	5.9	35.1	89.8	
1982	53.0	93.7	85.9	3.4	4.9	32.4	22.5	
1984	48.9	97.8	131.8	0.8	3.1	24.0	10.1	

資料：농수산부, 「農政主要指標」, 1985.

(3) 黃延秀(1983), pp.124~126.

(4) Robinson, J., (1981), pp.102~104.

품목의 농산물 가격은 폭락시비를 벗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農家負債를 증가시킨 한 원인이었나고 할 수 있다.

또 農家負債의 증가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공업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농업부분에의 두지를 너무 등한시했다는 사실이다.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農業部門의役割은 여러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많이 주장되었다. 自由放任과 自由貿易을 주장한 古典學派 經濟學者들도 국립경제학에서의 농업부문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농업의 발전은 도시의 제조업의 발전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 Smith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生活資料는 본질적으로 생자원에 便宜品과 奢侈品에 앞서는 것이므로 前者를 조달하는 산업은 반드시 後者에 공헌하는 산업에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생활자료를 제공하는 시장의耕作과 改良이 반드시 鑄의 품과 사치품의 수단을 공유하는 도시의 확대에 선행하여야 한다. 시장의剩餘生產物들이 즉 경직자와 생활유지 이상의 것만이 도시의 생활자료를 구성하며 도시는 이 영역생산물의 증가와 더불어서 만이 확대될 수 있다.”⁽⁵⁾

“따라서 사물의 자연적 지게과정에 따르면 모든 발전적인 사회의 대부분은 첫째 農業, 그 다음이 製造業, 그리고 마지막으로 外國貿易에 돌입된다. 일의 이런 순서는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므로 영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에선 어느 정도 판월되어 있어 사행이라고 할 수 있다.”⁽⁶⁾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外向的 工業化論이 우세하여 農業部門에 대한 財政投融資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하락하였다. <表 15>는 第一次經濟開發計劃期間부터 第四次經濟計劃期間까지의 財政投融資資金의 產業別配分現況을 나타내고 있다. 신임자원부분에서 農林業部門을 보면 절대금액은 증가해 왔으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즉 농·임업부문이 전체 財政投融資資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 1 차계획기간 동안에는 23.1%였으나 제 4 차계획기간 동안에는 13.9%로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1960년 이후 경제상황운용에서 農業部門의 개방을 등한시하였다는 면모인 예를 나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農業部門의 개발이 부진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생활기반이 위축하게 되고 그 결과 農家所得의 低下, 農家負債의 增大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表 15> 財政投融資 資金의 產業別 配分(1975年 不變價格)

(단위: 億원, %)

項 目	期 間		제 1 차계획기간		제 2 차계획기간		제 3 차계획기간		제 4 차계획기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產業支援部門	4,603	48.7	7,916	39.0	15,418	45.9	23,680	38.7		
그 중 農林業	2,181	23.1	4,424	21.8	6,919	20.9	8,270	13.9		
產業基盤造成部門	4,271	45.2	8,477	41.8	11,693	35.4	21,675	36.4		
社會基盤造成部門	344	3.6	3,173	15.7	3,781	11.5	10,316	17.3		
其 他	237	2.5	707	3.5	2,406	7.3	4,020	6.6		
合 計	9,456	100.0	20,273	100.0	33,028	100.0	59,691	100.0		

資料：柳漢成(1983), p.500에서 채가상.

IV. 1930年代 日本의 事例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農家의 負債問題를 日本은 1930年代에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 章에서는 1930年代 日本의 農家負債의 原因과 現況 그리고 그에 대한 對策을 분석해 볼수록써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부채 문제해결을 위하여 약간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5) Smith, A. (1983), p.377.

(6) Smith, A. (1983), p.380.

1929年 10月 美國 뉴욕의 월(Wall)街에서 일어난 株式價格의 暴落에서 비롯된 恐慌은 전 세계에 파급되어 이미 同年末에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日本經濟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 공황은 일본에서는 무엇보다 농업부문에 심한 타격을 주어 農業恐慌의 성격을 띠게 되었나. <表 16>은 농업공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당시 농가의 가장 주요한 부임원이던 누애는 1929년에서 1931년 2년동안 그 가격이 1/3수준으로 하락했고 기타 농산물 가격도 그 하락폭이 매우 큼 것이다. 이렇게 農產物價格은 폭락하였는데 반하여 農家가 購入하는 農業生產資財價格은 그만큼 하락하지 않았다. 또 非農業部門도 불황이 있기 때문에 農業外雇僕機會가 감소하여 農外所得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農家가 구입하는 消費財價格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租稅와 實質消費도 僵性的性格을 가지고 있어서 규격히 감소하지는 않았다.

<表 16> 1930년대 農業恐慌時 農產物 價格下落 現況 (단위: 円)

	1929년	1930년	1931년
누 애(合種一貫)	8.0	4.00	2.87
쌀 (一 石)	29.84	18.23	18.71
보 리(一 石)	10.58	3.18	6.33
밀 (一 石)	18.44	5.74	6.82
고 구 마(一 貢)	0.31	0.16	0.16
감 자(一 貢)	0.35	0.10	0.13
오 이(1 畝 地)	1.32	0.54	0.46

資料：安藤良雄(1963), p.165.

이번 요인들로 인하여 農가경제가 매우 악화되고 負債가 누적하게 되었다. <表 17>은 1933년도의 日本農家の 所得과 負債現況을 나타내고 있다. 1933년도의 일본 農가의 平均所得은 726.08円이 있으며 平均負債는 660.35円이었다. 農가전체의 부채는 1929年末에는 45億円, 1932年末에는 55億円에 달할정도였다. 또 부채의 내용을 보면 農家負債의 원인이 農業經營上의 이유 즉 자임자금이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며 기인하기 보다는, 소비적인 부서에 기인한 쪽이 더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表 17> 1933년 日本의 農家所得과 負債現況

(단위: 円)

	自 作 農	自 小 作 農	小 作 農	二 者 平 均
農業所得	666.75	572.23	455.42	564.80
兼業所得	125.84	114.05	121.30	120.40
家事收入	45.56	37.05	40.01	40.88
所 得 合 計	838.15	723.33	616.73	726.08
農業用負債	352.25	392.78	221.92	322.31
兼業用負債	11.90	5.47	0.08	5.82
家事用負債	358.08	362.61	275.96	332.22
負債合計	722.23	760.86	497.96	660.35

資料：河田嗣郎, 俗 正夫(1979) p.350.

한편 福岡縣 農會가 1933년 3월~34년 2월까지의 1년간 標本農家를 대상으로 農家の 收入과 支出现況을 조사한 결과가 <表 1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特別支出이라는 것은 외상값, 借入會返済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가계비자출이 261円인데 비하여 부채이자가 112円, 특별지출이 176円이었는데 이 사실에서 農가에 대하여 부채의 압박이 매우 심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表 18〉 日本 農家の 収入一支出 現況((1932~33년)
(단위 : 円)

收 入		支 出	
공업 수입	591.35	농업 지출	189.72
경업 수입	37.77	가계비	261.26
기타 수입	65.03	경업 지출	0.45
수입 수입	71.28	조세 부담	24.41
		부채 이자	112.39
		특별 지출	176.36
계	765.43	계	764.59

資料：河田嗣郎，俗正夫(1979)，p. 352。

이번 農家負債의 利子率을 나타내는 것이 〈表 19〉이나, 이 表에서 보면 利子率이 약 12%인 경우 高利債은 약 28.5% 뛰어 넘지 않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농가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음 경우 채권자가 불리하고 채무자가 유리하나 이 당시에는 디플레이션의 시기였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表 19〉 1932년 日本 農家負債의 利子率別 構成

(단위 : 100萬円, %)

	7% 미만	7 ~ 10%	10 ~ 12%	12 ~ 15%	15%	계
金額	411	1,386	1,198	930	260	4,185
構成比	9.8	33.1	28.6	22.2	6.3	100.0

사료：加藤 譲(1983)，p. 167

이번 農家負債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⁷⁾ 여러 정책들에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時局救濟土木事業이다. 이것은 1932년부터 3년간 内務省, 농림성을 중심으로 土木事業을 農村中心으로 행하여 農民의 現金收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그 특징이 있다. 즉 農民과 失業者를 고용하여 그들의 임금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有効需要를 증대시켜 不況으로 부터 달출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 있다. 1932~34년간 여기에 소요된 經費는 中央財政負擔이 5.4억 円, 地方財政負擔이 2.9억 円에 합계 9.3억 円이었다. 또 이 經費는 内務省所管과 農林省所管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内務省所管은 道路改修, 中小河川改良, 砂防事業 및 항만의 改修가 주내용이었다. 한편 農林省所管은 圮墾, 土地改良 및 農業水利施設 등 農業土木事業이 그 주내용이었다. 이 사업은 당시 현금수입이 부족하던 농가에게는 농한기의 현금수입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부채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農村의 經濟更生運動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각 郡村에게 經濟更生計劃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주어 지원하였다. 그 계획의 내용은 農業經營의 多角化, 自給度의 向上, 共同購買, 販賣體制의 강화, 부채정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운동은 농가에게 불황에 대한 저항력을 기울이거나 활동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외에도 自力更生의 精神運動의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經濟更生運動은 產業組合, 農會, 巾町村, 행정기관 및 學校 등에 의해서 공동으로 추진되었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産業組合이다. 産業組合은 당초 小竹農, 索細農家에게 對人信託으로 토지임대료의 내부를 목적으로 信川組合을 설립하기는 하지에서 제출된 信用組合法을 발전시키 信用組合이 외에 販賣, 購買, 生產組合까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産業組合法에 의해서 설립된 여러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1935년 이 「産業組合法」이 제정되고 1936년에 産組擴充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다. 이

(7) 加藤 譲(1983), pp. 168~175.

계회의 내용은 조합이 설립되기 않은 町村의 해소, 全農家の 組職化, 全組合의 4種(信用, 販賣, 購買, 利用) 兼營組合化, 購販事業의擴張, 그리고 系統利用率의 向上 등 이 있다. 그 결과 產業組合의 組職은 총실해 가지고 事業은 확장되었다.

다음으로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으로 들 수 있는 것은 財政資金의 융통인데 그것의 주요한 내용은 大藏省預金部資金의 低利供給이다. 즉 大藏省預金部資金을 耕地整理組合, 產業組合 등을 통하여 농기들에게 低利로 공급하여 債利借負債를 정리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하였던 것이다. 1935년末의 차입잔고로 보면 耕地整理組合이 120百萬円, 產業組合이 104百萬円, 그리고 地方公共團體가 55百萬円 등이었다. 특히 產業組合의 경우 당시 상당할 정도로 가금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低利의 財政資金의 융자는 農業恐慌의 피해를 보고 있던 농가에게는 經濟更生運動 및 產組擴充 5개년계획과 힘들 하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農家負債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여러 가지 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여기서 농가부채 정리의 지지 관련된 것으로는 「農家負債整理組合法」이 있다. 이 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集落單位별로 負債轉押組合을 조성시킨다. ② 이 부채정리조합은 組合員의 債務條件緩和 및 元利金의 減免, 借入期限의 長期化, 利子率引下 등을 주신하고, 조합원에게 經濟更生計劃, 負債償還計劃을 수립토록 하여 그 계획의 이행은 약속한 조합원에게는 一千円한도의 부채정리자금을 내부한다. ③ 市町村은 預金部資金을 재원으로 하여 부채정리조합에 대하여 종액 2億円을 한도로 특별융통을 행하여 부채정리의 원활화를 꾀한다. ④ 이 융통에 의해서 市町村이 손실을 본 경우에 市町村의 융자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府縣이 市町村에 손실보상을 하고 國家는 府縣에게 보상에의 반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부채액은 46億円 내지 55億円이 있는데 종액 2億円으로 융자를 한다는 것은 經濟更生運動과 같이 정진운동의 축면이 강한 것이다. 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부채정리조합의 수는 1937年 7月의 경우 5,916개이었으나 실제로는 수속이 복잡하여 융자가 이루어진 것은 25百萬円에 불과하였다.

1937년에는 이 법은 개정하고 또 「農村負債整理資金特別融通及損失補償法」이 세정되어 농기부채성리가 진일보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銀行·信用·等을 하는 기관은 市町村이 외에 產業組合中央金庫와 特殊銀行들을 보유시킨다. ② 信用組合은 동어서도 부채정리조합에 융통하게 한다. ③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액은 인정시킨다. 이런 조치들에 의해서 부채정리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데 1942年末의 경우를 보면 설립된 負債整理組合數가 10,585개, 융자결정액은 70.8百萬円이었다. 농기부채성리시입은 1939年을 기점으로 하여 겉자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전시하 일몰레이션에 의하여 農家收人の 증대와 關稅하는 物質의 부족으로 인하여 농가의 저축이 증가하여 가기자금에 의한 부채 상환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V. 結論

이제까지 현재의 우리나라의 農家負債의 現狀와 그 原因, 그리고 1930年代 日本의 사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1980년초 일본농가의 個別 평균부채액은 1,889千원으로 나나났는데 이것은 한 時기의 소득수준에 비해 믿을 만큼 커야 한다. 이러한 부채는 차입 당시 대여금이 소비자물 및 教育費로 사용된 것이었나. 이것에서 보듯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은 기본적인 소비자물과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農家負債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本稿에서는 政府의 低農產物價格政策, 農產物輸入의 増大, 그리고 農業部門의 누가부진이 따른 주민에 시고침해 보았다.

그리고 1930년대의 日本의 農家負債도 고찰해 보았다. 일본의 農家負債는 農業恐慌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이 주원인 이유는 일본은 그 당시 농기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면, 금융적인 면, 주민정신운동의 축면 등 다양한 면에 걸쳐 노력한 결과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농기부채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農村問題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國民經濟에서 農業部門을 바라보는 근본기가부터 고쳐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및 資料

1.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기 바보고」, 1985.
2. 농수산부, 「농립동개업보」, 1985.
3. 農協中央會, 「韓國의 農業金融」, 1984.
4. 柳漢成, “韓國經濟發展과 財政投融資,” 「國家預算과 政策目標(1983년도)」, 韓國開發研究院, 1983, pp. 437~514.
5. 金性統, “韓國의 經濟發展과 均衡發展의 問題(1) – 農工商均等問題를 중심으로,” 「經濟學研究」 제32집 韓國經濟學會, 1984년 12월, pp. 257~284.
6. 이우재, “농가부채 실태와 그 문제점,”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끝페개, 1984.
7. 金自換, 丁安聲, 「農業金融制度改善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16, 1980.
8. 李賢宇外, 「韓國의 民間財務에 관한 研究」, 壽光大學校 經濟研究所, 1979.
9. 袁延秀, 「米穀生産費와 米價水準에 關한 研究」, 商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3.
10. 加藤謙, 「農業金融論」, 明文書房, 1983.
11. 梅川勉外(申大燮역), 「농업경제학개론」, 청사, 1983.
12. 安藤良雄, 「現代日本經濟史」, 日本評論社, 1963.
13. 川上正道, 上原信博, 「農業政策論」, 有斐閣, 1980.
14. 河田嗣郎, 俗 正大, 「農家負債とその整理」(覆刻版), 昭和前期農政經濟名著集 15, 農山漁村文化協會, 1979.
15. Janvry, Alain de, 「The Agrarian Question and Reformism in Latin Americ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16. Robinson, Joan, 「Aspects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17. Smith, Adam(崔壬煥역), 「國富論」, 乙酉文化社, 1983.